

『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12월 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12월 9일

라. 상정일자 : 2008년 12월 18일

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석 태 룡

나. 제안이유

-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의 변경에 따른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
금고를 변경하기 위함
-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주로
대상자를 선별하여 전세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

다. 주요내용

-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이 국민은행, 우리은행, 농협 3개 은행에서 우리은행, 농협, 하나은행, 신한은행, 기업은행 5개 은행으로 확대되어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금고를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으로 변경코자함 (안 제4조)
- 정부부처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코자함 (안 제6조)
-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지원을 위한 근거마련 (안 제1조, 제2조제3항, 제5조, 제14조~제21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2항제2호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나 명 철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2항제2호다목에 의거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경감과 자활의욕 고취 및 사회 양극화 해소를 도모하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금고를 국민주택기금 취급 5개 은행으로 확대
-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⇒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
(안 제4조)

- 정부부처 명칭변경 : 건설교통부장관 ⇒ 국토해양부장관(안 제6조)
-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함
(안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)

○ 검토 결과

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2항제2호다목에 의거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택사업특별회계 자금으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 임
-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1세대 당 3,000만원 이내 지원에 금리 연 2%이자 적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과 사회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